

# 學界回顧

李均成★

## I. 學會動向

本學會는 創立時부터 다짐하였던대로 우리나라 環境法學界的發展을 위하여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展開하기로 하고 1981年度의 事業計劃을樹立하였다.

이에 필요한 事業基金으로, 文教部로부터 1981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學會誌發刊補助費를 受領하였다.

1981年度에는 例年의 量的인 學會活動보다 質的인 學會活動으로 演進 결과가 되었다. 1981年度에 이특한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學會誌인 「環境法研究」第3卷의 發刊, '81年度 定期심포지움의 開催가 그 主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樹立 및 推進을 위한 몇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學會는 韓國環境法學의發展 및 合理的인 環境政策의決定과 環境行政의確立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해마다 重點的인 研究分野를 달리해 왔다. 1981年度에는 「環境關係法令의 整備를 위한 綜合的・比較法的研究」을 그 主題로 確定하여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受領하였다. 이 主題의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선정하였다.

- ① 大氣保全法制(鄭權燮)
- ② 驚音・振動 및 日照保護 規制法制(全昌祚)
- ③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 本學會幹事

④ 廢棄物規制의 改善方案(安基熙)

⑤ 海洋環境保全法制(李均成)

## (2) 學會誌發刊

1980 年度의 本學會 研究事業의 결과를 수록한 本 學會의 學會誌「環境法研究」第 3 卷이 1981 年 7 月 3 日字로 出刊되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環境權(金哲洙)
- ② 環境規制行政(李尚圭)
- ③ 環境汚染에 대한 行政的 規制(朴秀赫)
- ④ 環境汚染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梁承斗)
- ⑤ 環境基準의 比較法的 考察(許慶)
- ⑥ 喫煙規制의 法理(金元主)
- ⑦ 公害訴訟에 있어서 訴訟救助(金洪奎)
- ⑧ 判例詳釋: 우리 나라의 公害判決(具然昌)
- ⑨ 學界回顧(李均成)

「環境法研究」第 3 卷은 學會誌 頒布方針에 따라, 全會員, 各大學 中央圖書館, 環境關係機關 및 專門家에게 配布하였으며, 一般人の 購讀要請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鐘路 1 街 所在의 鐘路書館과 光化門 所在의 中央圖書展示館에 비치해 두고 있다.

## (3) 1981년도 定期심포지움의 開催

1981 年度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研究發表會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定期 심포지움이 11 月 13 日 늦게나마 開催할 수 있었다.

本 學會의 심포지움은 지난 해까지는 주로 大學에서 가졌으나, 環境問題가 주로 企業活動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점과 產學協同의 精神에 입각하여, 環境保全金協會의 後援으로 大韓工商會議所 大會議室에서 開催함으로써, 本 學會 會員은 물론 뜻깊은 企業人과 環境關係從事員들이 대거 참석하여 7 시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열띤 討論을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第 5 共和國 憲法에 環境權이 明文化되어 全國民의 環境權意識이 점점 高潮化되어가고 있는 때에, 國家의 最高法인 憲法의 環境權理念이 下位의 環境關係法令에 하루 빨리 흡수, 정비되어야 함은 당연한 命題라 할 것이다. 環境保全에 관한 一般法인 環境法 등은 극히 일반적인 事項만을 규정하고 있고, 약 70~80 個에 이르는 特別法이 環境保全에 관한 事項을 散發的으로 규정하고 있어, 一般國民의 입장이나 關係機關에서 모든 環境關係法令의 綜合化와 體系化를 절실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環境問題의 複雜性과 廣域性에 비추어 環境法의 用語조차 생소한 現實을 감안하여, 環境關係法의 改正을 앞두고 環境保全의 基本精神에 알맞는 綜合的인 法整備와 體系化가 時急한 現實에서, 本 學會의 定期심포지움은 學界와 企業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環境保全協會長의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의 適正調和」를 내용으로 하는 祝辭와 國會 保社委員會의 幹事인 李祥羲 議員의 「環境政策과 立法方向」의 招請講演의 內容 역시 앞으로의 環境立法은 各部門의 汚染狀況을 綜合的으로 管理하고 이를 다시 體系的으로 專門化하는 方向으로 指向할 것이라고 發表하여, 環境關係專門家와 公務員, 그리고 企業人們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다.

위 1981년도 定期심포지움의 進行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日時 : 1981. 11. 13(金) 9:30~16:30
- ② 場所 : 大韓商工會議所 大會議室
- ③ 主題 : 現行環境關係法令의 綜合的 研究
- ④ 參席者 : 本 學會會員教授, 公務員, 企業人 등 120 人
- ⑤ 심포지움 進行 프로그램 :
  - (가) 開會辭(李尚圭 會長)
  - (나) 祝辭(鄭壽昌 環境保全協會 會長)
  - (다) 第 1 部 主題發表
    - (i) 大氣保全法制(鄭權燮)
    - (ii) 騰音·振動 및 日照保護 規制法制(全昌祚)
    - (iii)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라) 第 2 部 主題發表

- (i) 廢棄物規制法(安基熙)
- (ii) 海洋保全法制(李均成)
- (iii) 環境法制의 運用問題(權肅杓)
- (마) 第3部 綜合討論
  - (i) 大氣部門(車喆煥: 고려대 및 李達雨: 한국코트렐工業(株))
  - (ii) 驟音·振動部門(車日煥: 연세대)
  - (iii) 水質·土壤部門(全東汝: 서울시립대)
  - (iv) 環境紛爭部門(權龍雨: 단국대)

## II. 法制의 整備

1981年은 環境廳이 創設 1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環境政策의 座標를 設定하기 시작하였고, 環境廳이 主管하는 環境行政 實施上의 문제점을 補完하기 위한 環境保全法의 改正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海洋環境의 惡化로 沿岸住民의 반발이 일자 海域別水質基準을 設定할 수 있는 등의 海洋污染防止法의 改正案이 議員立法으로 發議되는 등 環境問題가 낱로 政策次元으로 深化되어 가는 경향에 있었다. 環境保全法과 海洋污染防止法의 주요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環境保全法

法律 第3505號(81. 12. 31)의 改正法은 '79. 12. 28자의 法의 근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部分的인 未備點의 補完에 그친 듯하나, 實질상의 特質은 環境權을 의식한 環境法의 性格으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첫째, 目的의 範圍의 擴大를 들 수 있는 바, 종래의 公害法의인 事後規制나 保健衛生上의 危害豫防과 環境을 事前에 適正하게 管理·保全·利用하는 「規制」에서, 「管理」의 環境法의 性格으로 轉換하면서 環境權의 受惠者를 現存하는 國民뿐만 아니라 다음 世代에까지 확대, 배려한 점이 附 이하다.

둘째, 環境行政의 求心點인 環境基準의 維持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義務지위 環境基準의 適正維持를 위하여 關聯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을  
樹立, 執行하도록 強制化하고 있다.

세째, 環境影響評價의 基盤構築을 위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위한 研究,  
技術開發, 要員의 養成, 關聯情報蒐集과 評價代行機關의 擴大를 들 수  
있다.

네째, 排出施設規制의 多樣化로서, 排出施設의 許可를 받은 者의 防止施  
設의 設置를 義務화하고, 工團 등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에서는 共同防止  
施設의 設置를 可能하도록 길을 터주고 있으며, 이러한 事業者의 技術檢  
討를 위하여 環境廳에 環境技術監理團을 設置, 運營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다섯째, 排出賦課金制의 新設인바, 이는 事業者가 改善命令 또는 移轉命  
令을 받은 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면서 操業을 하는  
경우 環境廳長이 賦課하는 것으로, 이번에 新設된 內容은 全事業者에게 環  
境資本의 使用稅로서의 賦課金이 아니라, 일단 改善命令이나 移轉命令을  
받은 事業者에게만 賦課되는 것으로, 이는 賦課金의 徵收의 目적보다 事前  
豫防의 측면에서 汚染物質의 排出을 억제하려는 뜻이 더 크다고 하겠다.

여섯째, 夜間通行禁止의 解除와 때를 같이하여 住居生活의 靜穩을 保護  
하기 위하여 深夜에 있어서의 驚音이나 擴聲器에 의한 驚音 등의 生活驚音  
을 規制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產業廢棄物의 再生·利用으로 產業廢棄物의 發生을 최대한 억  
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廢棄物의 資源化를 誘導하고 있다.

여덟째, 排出施設 등 環境事業場에서 근무하는 環境要員에게 5年마다 1  
回이상 環境廳長이 指定하는 訓練機關에서 環境教育을 履修하도록 義務화  
하고 있다.

아홉째, 環境污染防治基金制의 新設인바, 環境污染防治事業과 環境污染  
으로 인한 被害나 救濟 및 事業者의 防止施設投資에 대한 長期低利融資를  
위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環境基金을 設置하도록 규정하고, 새로 環  
境污染防治事業團을 法人으로 設立하여 이 基金을 管理·運營하도록 하고  
있다.

글으로, 用語의 部分的 補完整理와 罰則의 強化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改正法 역시, 環境保全의 最高理念인 憲法에 明文化된 環境權의 指導原理가 곧 바로 下位關係法令을 總括하고 綜合調整의 機能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는 「環境基本政策法」의 制定을 촉구하는 問題는 向後의 課題로 남기고 있다.

## (2) 海洋汚染防止法

法律 第3531號(1981. 12. 31)의 改正法은 그 分量은 많지 않으나, 內容 면에서는 國家海洋環境政策意志의 轉換이라는 次元에서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法은 종래의 통상적인 偵例인 政府案으로 提出되지 않고 民政黨國會議員 李祥羲外 41人의 發議로 處理된 議員立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海洋과 같은 廣域管理와 規制를前提로 하는立法은 앞으로도 어느 한 部處의 利害關係에 의한 發議보다는 各部處 利害關係의 綜合·調整의 確保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 政府案과 議員立法案의 絶충안으로서의 議員立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改正法은 그 提案理由에서 밝히고 있듯이, 「內陸污染源에 의한 臨海工團地域 등의 沿岸污染現象은 養殖產業 및 水產資源保護, 沿岸漁民의 生計維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沿岸污染源의 事前規制 및 海洋污染防治對策을 綜合的이고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法的 土臺를 마련하여 海洋環境 및 水資源 保護에 기여하는 것」의 現實的 要請에 의하여, 海洋環境保全에 대하여 環境廳長의 規制權限을 처음으로 부여하는 것을 內容으로,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

첫째, 海域別 水質基準의 制定：環境廳長은 海洋環境의 適正한 保全을 위하여 海域이 自然地形, 用途 및 陸地로부터의 距離 등에 따라 海域別 水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둘째, 沿岸污染特別管理海域의 指定：環境廳長은 閉鎖性海域 등이 汚染되어 海域別 海水의 水質基準을 維持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汚染의 防止를 위하여 陸地에 접속한 일정한 海域을 沿岸污染特別管理海域으로 指定할 수 있으며, 그 海域內의 汚染防止基準과 行爲를 制限할 수 있다.

세째, 汚染測定網의 設置運營：環境廳長은 海域의 汚染狀況 및 汚染源의 調査 등을 위하여 汚染測定網을 設置하고 이를 定期的으로 管理·運營 할 수 있다.

네째, 海洋污染防止審議委員會의 設置：종래의 內務部長官 所屬下에 두고 있던 技術的 諮問機構인 「海洋污染防止諮詢委員會」를 國務總理 所屬으로 格上하고, 아울러 機能을 단순한 諮問機構에서 重要한 海洋政策의樹立 및 執行에 관한 專項을 審議하는 「政策審議機構」로 強化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海洋은 人類가 마지막 남긴 寶庫로서 海洋環境問題와 아울러 資源問題로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船舶이나 海洋施設에서 排出되는 기름이나 廢棄物을 規制하는 防止法의 次元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生態學的 問題(ecological problems), 生活環境的, 社會的, 經濟的, 審美的 問題로까지 總括하는 광범한 内容을 담는 海洋環境法의 性格의 새로운立法이 아쉽다.

### III. 研究活動

1981年의 環境關係의 研究活動은, 本 學會의 것 이외에도, 環境行政을主管하는 環境廳과 立法을主管하는 國會 및 政府와 民間企業間의 中間的位置에서 調査研究·技術開發·啓蒙事業을 주로 펴는 環境保全協會의活動은 주목할 만했다.

#### (1) 環境廳의 活動

開廳 1周年을 넘긴 環境廳으로서는 環境行政의 座標라 할 수 있는 環境行政의 長·短期基本計劃樹立을 위한 여러 가지 研究調查作業을 多角的으로 展開하였다. 그 중에서도 環境政策 實現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環境影響評價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開發計劃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981. 10. 14~16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國際規模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여 그 報告書를 펴낸 것은 높이 평가된다. 그 主要發表課題는 다음과 같다.

- ① 韓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金亨澈: 環境廳)
  - ② 韓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立法的 側面의 檢討(全昌祚: 東亞大)
  - ③ 環境影響評價實施와 方法(申應培: 科技院)
  - ④ 環境影響評價를 위한 基礎情報(盧在植: 한국에너지 연구소)
  - ⑤ 生態學的 接近方法에 의한 環境影響의 最少化方案(金成基: 國土開發研究院)
  - ⑥ 東江河口堰建設(金桂鏞: 產業基地開發公社)
  - ⑦ UNEP 와의 示範모델 事例研究(金仁煥: 環境廳)
  - ⑧ 美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A. Rivera Cordero: WHO)
  - ⑨ 美國의 環境影響評價法(A. Rivera Cordero: WHO)
  - ⑩ EIA 의 國際的 傾向(Maung Nay Htun: UNEP)
  - ⑪ 開發途上國의 環境影響評價(Dhira Phantumvanit: UNEP)
  - ⑫ 大氣質에 미치는 影響分析(W.E. Kreisel: WHO)
  - ⑬ 水質에 관한 影響評價(Paul, H.M. GUO: WHO)
  - ⑭ 社會·經濟的인 面에서의 影響評價(R.A. Waller: 英國 Atkin 社)
- 그리고 環境保全法과 汚物清掃法의 改正案을 提案하여, 1981年 12月에 環境保全法의 改正是 보았으나, 汚物清掃法은 1982年에 들어와서 改正되었다(82. 4. 2).

## (2) 政黨 및 國會의 活動

### (가) 政黨의 活動

종래까지는 環境問題가 學會와 各種 團體에서 各分野別로 散發的으로 研究·調查·取扱되어 왔으나, 環境行政을 綜合的으로 主管하는 環境專門機關인 環境廳이 創設되고, 憲法에 環境權이 明文化되는 등 國民의 環境權意識이 점점 高潮되는 가운데, 例年과는 달리 國會本會議의 對政府質問이나 常委活動에서 環境問題가 제속 거론되었는가 하면, 1981年 7月 15日 民主韓國黨에서는 政黨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環境汚染과 그 對策을 위한 세미나」를 開催함으로써 環境問題를 黨派와 黨利를 利用하는 보다 次元높은 政策問題로의 그 意志를 提起한 바 있다.

① 日時 : 1981. 7. 15. 14:00~18:00

② 場所 : 民主韓國黨 會議室

③ 主管 : 政策審議室 社會福祉委員會

④ 進行프로그램

(i) 司會 : 金燦于議員(政策審議室 社會福祉分科委員長)

(ii) 講演 : 環境污染과 그 대책(權肅杓)

(iii) 主題發表

◦ 第 1 主題 : 先進國의 公害經驗과 環境容量(朴魯敬)

◦ 第 2 主題 : 環境權守護政策(金憲圭)

◦ 第 3 主題 : 環境問題解決을 위한 代案分析(安松德)

(iv) 討論參加者

◦ 學界 : 車喆煥(고려대)

◦ 經濟界 : 申奉植(全經聯)

◦ 民韓黨 : 高在清(國會議員)

鄭貞薰( " )

李廷彬( " )

沈憲燮( " )

徐鍾烈( " )

(나) 國會의 活動

前述한 바와 같이, 海洋汚染防止法의 議員立法를 높이 評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麗川工團 및 馬山港의 赤潮現象 등에 의한 漁民들의被害을 調査하기 위하여 國會與·野 合同調查班(民正黨 : 李祥羲 議員, 民韓黨 金燦于 議員, 民社黨 배찬기 議員)을 편성하여, 現地에서 직접 그 汚染의 被害狀況의 實態調査를 實施함으로써, 環境政策을 위한 立法에 參考資料를 삽은 것은, 國會에서까지 環境問題解決에 깊이 關與하는 次元으로 나가게 한 것이다.

(3) 環境保全協會 등의 活動

環境保全關係 學術·技術의 綜合研究誌인 「環境保全」을 發刊하고, 會員

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相談室과 資料室의 設置·運營하고, 環境保全協會報의 發刊(12回), 排出施設管理人의 環境教育, 4回에 걸친 새로운 法令 解說세미나를 실시하였고, 1981. 10. 12 環境廳長으로부터 汚染物質 測定代行機關으로 指定받아 測定代行業務를 開始함으로써 名實相符한 調査研究·技術開發·啓蒙事業의 機能을 다할 차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產業公害研究所가 「公害對策」을, 現代環境管理所가 「環境과 公害」를 發刊함으로써 學界에 이바지한 바 크다 하겠다.

#### (4) 環境關係論文

- ① 安基熙, 「大氣와 물의 淨化를 위한 最適化規模의 方法과 廣域管理」, 環境保全協會報, 1981. 3. 15.
- ② 曹允承, 「유럽 經濟共同體(EEC)의 環境政策」, 公害對策, 1981. 4.
- ③ 安基熙, 「四大江淨化를 위한 最適化規模의 方法 考察」, 公害對策, 1981. 6.
- ④ 金哲洙, 「環境權」,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⑤ 李尙圭, 「環境規制行政」,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⑥ 朴秀赫, 「環境污染에 대한 行政的 規制」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⑦ 梁承斗, 「環境污染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⑧ 許慶, 「環境基準의 比較的 考察」,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⑨ 金元主, 「喫煙規制의 法理」,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⑩ 金洪奎,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訴訟救助」, 環境法研究 第3卷, 1981. 7.
- ⑪ 安基熙, 「環境保全運動과 環境教育의 方向」, 環境保全協會報, 1981. 12.
- ⑫ 車喆煙, 「弗素排出工場附近의 環境污染에 관한 調査研究」, 環境保全 第2卷 1981. 12.
- ⑬ 權肅杓, 「微生物을 利用한 醫學品產業廢棄處分工程에 관한 研究」, 環境保全 第2卷, 1981. 12.
- ⑭ 李瑞來 外 3人, 「洛東江水系의 水質保全을 위한 調査研究」, 環境保全 第2卷, 1981. 12.

- ⑯ 洪淳佑, 「中浪川 下水處理場에서 一般水質과 細菌의 處理動態」, 環境  
保全 第2卷, 1981. 12.
- ⑯ 孫來憲 外 1人, 「漢江流域의 淡水魚中 總水銀 含量에 關한 研究」, 環  
境保全 第2卷, 1981. 12.